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 3 차 본 회 의
2022.12.15.(목) 10:00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 고 순 서

①	심사대상 및 경과	1
	가. 심사대상	1
	나. 심사경과	1
②	2023년도 본예산안 편성 개요	2
	가. 본예산의 개념	2
	나. 본예산안 편성 근거	2
	다.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2
③	2023년도 본예산안 편성 내용	3
	가. 본예산안 총괄 현황	3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4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5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9
	마. 기금운용계획안	11
④	주요 검토사항	13
	가. 화성시의 재정여건	13
	나. 일반회계 세수추계의 적정성	14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	15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6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15일(목)
제3차 본회의

① 심사대상 및 경과

가. 심사대상

-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나.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화성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08일
- 상정일자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12. 08.)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12. 09.)
 - 상정, 질의·답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12. 12.)
 - 상정, 질의·답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12. 13.)
 - 상정, 질의·답변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12. 14.)
 - 상정, 질의·답변
 -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② 2023년도 본예산안 편성 개요

가. 본예산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광역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기초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

나. 본예산안 편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다.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 재정운용 여건

○ 세입분야

(지방세) 대기업 영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소득분 증가 및 관내 사업장 호실적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증가 예상되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입 부정적 요인 공존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예년 대비 크게 증가 전망 예측

(이전수입) 부동산 거래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다소 감소 예상되나 농림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확대로 국도비보조금은 증가 예상

- 세출분야
 - (지역경제) 생활물가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계층 보호
 - (균형·혁신성장) 동서간 지역균형 발전,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위한 혁신성장 투자 확대
- 재정운용 방향
 - 균형 발전 추진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극복
 -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응답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권역별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컨설팅 등 경영지원 인프라 구축
 -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화성국제테마파크, 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

3 2023년도 본예산안 편성 내용

가. 본예산안 총괄 현황

- 금번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2조 9,481억원보다 **1,751억원이 증가한 3조 1,231억원으로 편성**하였음.

〈표-1. 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조 1,231	2조 9,480	1,751	5.94
일반회계	2조 7,848	2조 5,750	2,098	8.15
특별회계	3,384	3,731	△347	△9.3
공기업	2,765	3,100	△335	10.82
기 타	619	631	△12	1.84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라 2022년 당초예산보다 1,912억원 증가한 1조 7,008억원이며,
 - ▶ 지방세수입 1조 5,398억원 등

- 이전수입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85억원이 증가한 1조 839억원을 편성함.
 - ▶ 지방교부세 100억원, 국도비보조금 8,559억원 등

〈표-2.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조 7,847	2조 5,750	2,097	8.14
지방세 수입	1조 5,398	1조 3,728	1,670	12.17
세 외 수 입	1,610	1,368	243	17.74
경상적세외수입	1,121	875	245	27.99
임시적세외수입	344	332	12	3.5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	160	△14	△8.94
지방교부세	100	242	△142	△58.63
조정교부금등	2,181	2,458	△277	△11.29
보조금	8,559	7,954	605	7.6
국고보조금	6,514	6,096	418	6.86
시·도비보조금	2,045	1,858	186	10.02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청사 조성 및 관리에 172억원, 내부 고객 지원에 149억원 등 1,426억원 편성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3억원, 안전영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64억원 등 331억원 편성
- 교육 분야는 미래인재 양성 기반 구축에 133억원, 이음터 사업에 116억원, 등 523억원 편성
- 문화·관광 분야는 화성시문화재단 지원에 112억원 도서관 조성에 293억원, 등 2,095억원 편성
- 환경 분야는 하수도 사업 운영에 4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931억원 등 2,071억원 편성
-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1,897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90억원 등 1조 251억원 편성
- 보건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5억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22억원 등 676억원 편성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무상급식 지원 410억원, 우리꽃식물원 운영에 23억원 등 2,980억원 편성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02억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6억원 등 787억원 편성

- 교통물류 분야는 사도 확포장 공사에 125억원, 버스공영제 운영 269억원 등 3,340억원 편성
-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179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5억원 등 359억원 편성
- 예비비에 366억원, 기타 분야는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2,642억원을 편성하였음.

〈표-3. 일반회계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억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조 7,847	2조 5,750	2,097	8.1
일반공공행정	1,426	2,036	△610	△29.9
공공질서 및 안전	331	276	55	20.0
교육	523	454	69	15.3
문화 및 관광	2,095	1,633	462	28.3
환경	2,071	2,036	35	1.74
사회복지	10,251	9,118	1,133	12.4
보건	676	733	△57	△7.78
농림해양수산	2,980	2,276	704	30.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87	689	98	14.2
교통 및 물류	3,340	3,402	△62	△1.8
국토 및 지역개발	359	245	114	46.5
예비비	366	320	46	14.3
기타	2,642	2,533	109	4.31

〈표-4.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성질별)〉

(단위:억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조 7,847	2조 5,750	2,097	8.1
인건비	1,986	1,885	101	5.3
물건비	1,649	1,497	152	10.1
경상이전	17,612	15,602	2,010	12.8
자본지출	5,861	5,154	707	13.7
내부거래	373	1,323	△950	△71.8
예비비 및 기타	366	289	77	26.6

〈표-5.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위원회)〉

(단위:억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조 7,847	2조 5,750	2,097	8.1
의회운영위원회	68	62	6	9.6
기획행정위원회	4,709	5,177	△468	△9
경제환경위원회	4,823	4,450	373	8.4
교육복지위원회	13,248	11,685	1,563	13.4
도시건설위원회	4,999	4,375	624	14.3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분야로서, 총 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346억원 감소한 3,384억원**을 편성하였음.
-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335억원 감소한 2,765억원**을 편성함
-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242억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129억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서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원 감소한 619억원을 편성함**

〈표-6.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384	3,731	△347	△9.3
세 외 수 입	2,213	2,120	93	4.3
경상적세외수입	1,858	1,713	145	8.4
임시적세외수입	120	56	64	114.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5	352	△116	△32.9
보조금	311	207	104	50.2
국고보조금	266	186	80	43
시·도비보조금	44	20	24	12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60	1,404	△544	△38.7
보전수입 등	621	970	△349	△35.9
내부거래	239	434	△194	△44.9

〈표-7.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384	3,731	△347	△9.3
공기업특별회계	2,765	3,100	△335	△10.8
상수도사업	1,410	1,777	△367	△20.6
하수도공기업	1,355	1,323	32	2.4
기타특별회계	619	631	△12	△1.9
공공폐수처리시설	60	5	55	1,010
폐기물처리시설	0.2	11	△10	△98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5	5	0	△0.6
화성함백산추모공원	129	80	49	60.7
교통사업	242	347	△105	△30.2
주민소득지원사업	35	44	△10	△22.3
대지보상사업	3	3	0	0.7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7	16	1	3
의료급여기금	43	39	4	9.8
도시재생	76	79	△3	△4.3
도시철도사업	10	0	10	순증

〈표-8. 특별회계 세출총괄표(위원회)〉

(단위:억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384	3,731	△347	△9.3
의회운영위원회	-	-	-	-
기획행정위원회	-	-	-	-
경제환경위원회	2,881	3182	△301	△9.4
교육복지위원회	172	119	53	44.5
도시건설위원회	331	430	△99	△23

마. 기금운용계획안

○ 지방기금제도의 개관

(1) 기금의 개념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

(2) 기금관련 근거법령

지방기금의 법체계

- 설치·운용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개별 법률
-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3) 기금의 특징

- ▶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기금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

- ▶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매년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의무화
-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금운용계획 정책
사업의 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4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 대비 **71억 증가한 3,578억원**

-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원,
융자금회수 28억원 등 총 266억원
- ▶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사업비 143억원
융자성사업비 50억원 등 총 195억원

<표-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억원)

기금명	2022년말 조성액 ^㉑	2023년도 운용계획		2023년말 조성액 ^㉑ = ^㉑ + ^㉒ - ^㉓	증감액 ^㉑ - ^㉒ - ^㉓
		수입 ^㉒	지출 ^㉓		
합계	3,508 (1,334)	266 (196)	195 (195)	3,578 (1,334)	71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74	70	0	2,244	70
사회적경제지원기금	532	36	56	512	△20
재난관리기금	210	125	36	299	89
남북교류협력기금	17	6	6	17	△0.1
문화예술진흥기금	47	0.8	0.5	47	0.3
체육진흥기금	104	3	3	105	0.1
사회복지기금	20	1	1	19	△0.2
노인복지기금	11	0.2	0.1	11	0.06
화성합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237	3	51	189	△48
양성평등기금	29	0.003	0.5	28	△0.5
식품진흥기금	18	4	8	14	△3
옥외광고발전기금	11	2	5	8	△3
농업인단체육성기금	24	0.3	2	22	△2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4	0.5	3	32	△3
그린환경센터주민지원기금	41	14	24	32	△9

※ 합계란의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화성시의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표-10.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최근 5년)〉

(단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 평균
재정자립도	68.9	66.3	58.4	58.6	61	62.6
재정자주도	74.7	74.8	67.4	69.0	69.2	71.0

※ 재정자립도 산출식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계예산]×100

※ 재정자주도 산출식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일반회계 총계예산]×100

- ▶ 관내 사업장 영업실적 개선으로 인해 지방세 증가 전망으로 2023년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 ▶ 전년대비 자체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교부세·교부금 감소 및 보조금 수입 증가로 인해 재정자주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화성시 채무액 현황

- ▶ 2012년도 말 화성시의 채무비율은 예산대비 17.6%인 2,210억원이 었으나, 2012년 이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여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채무액 ZERO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회계 세수추계의 적정성

- 일반회계 자체재원의 주된 재원이면서 사전에 세수추계가 가능한 보통세,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수추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최근 3년간 예산액과 결산액(실제수납액)의 차이를 확인하였음.

〈표-11. 일반회계 세수추계 현황(최근 3년)〉

(단위:억원)

구 분		본예산액 (A)	최종예산액 (B)	결산액 (C)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	
					C-A	C-B
지방세 (보통세)	2019년	12,102	12,102	12,981	879	879
	2020년	11,105	10,574	11,201	96	627
	2021년	10,650	11,682	12,729	2,079	1,047
경상적 세외 수입	2019년	774	946	965	191	19
	2020년	902	811	799	△103	△12
	2021년	939	928	947	8	19

- 그 결과, 지방세의 경우 본예산 대비 최종 결산액의 차이가 적게는 96억원에서 최대 2,079억원씩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세수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짐.

향후에는 정확한 세수예측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안정적으로 경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을 파악하여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

- 아래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검토한 결과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문화·관광분야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공공급식 농산물 이용 확대에 따른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예산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표-12. 일반회계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억원,%)

구 분	2021년도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조 989	2조 5,750	2조 7,847	2,097	8.1
일반공공행정	1,135	2,036	1,426	△610	△29.9
공공질서 및 안전	258	276	331	55	20.0
교육	457	454	523	69	15.3
문화 및 관광	1,225	1,633	2,095	462	28.3
환경	1,264	2,036	2,071	35	1.74
사회복지	8,110	9,118	10,251	1,133	12.4
보건	552	733	676	△57	△7.78
농림해양수산	2,048	2,276	2,980	704	30.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53	689	787	98	14.2
교통 및 물류	2,671	3,402	3,340	△62	△1.8
국토 및 지역개발	333	245	359	114	46.5
예비비	243	320	366	46	14.3
기타	2,141	2,533	2,642	109	4.31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의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의결

※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역 : 붙임 참조

[붙임]

2022. 12. 15.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

1.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 : 수정의결

가. 세 입 : 원안가결

나. 세 출 : 수정가결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액	감액	증액	의결액	비고
합 계	3,123,170,205	3,088,986	-	3,120,081,219	
일반회계	2,784,769,778	2,988,986	-	2,781,780,792	
특별회계	338,400,427	100,000	-	338,300,427	

※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삭감조서 참조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역 : 원안의결

가. 수 입 : 원안가결

나. 지 출 : 원안가결